군산우체국 공고 제2024-7호

2024년도 제1회 기간제 우정실무원 채용 공고

군산우체국에서 순로구분기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우정실무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군산우체국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근무예정우체국	채용인원	담당업무내용
기간제 우정실무원	군산우체국	1명	- 순로구분기 운영 등 - 기타 부대업무

2. 근로조건

가. 신분 및 근로계약 : 비공무원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 순로구분기 운용결과 분석 시 실적이 미진한 관서는 예산 배정이 제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24.10.31

다. 보수 : 일급 78,880원 + 정액급식비(월14만원) + 수당

ㅇ 수당 : 직무수당 월2만원

ㅇ 4대보험 가입 등

라. 근무시간 : 주 5일 (평일 월~금)

ㅇ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초과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마. 휴가 : 연차 유급휴가, 공무 유급휴가, 특별 유급휴가 등

바. 순로구분기 업무 특성

ㅇ 일평균 30,000여 통 이상의 통상우편물을 구분하는 순로구분기를 운용하기 위해 정보화 능력이 필요하고 20kg상당(최고30kg)의 다량의 통상우편물을 적재한 파레트를 운반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지역제한 : 공고일(2024.2.21.)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다.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성실한 자

라. 응시자격 제한

ㅇ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 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ㅇ 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서류전형시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가. 정보화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ㅇ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ㅇ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분 한)
- ㅇ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기술자격(ITQ)

나. 우체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제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발행기관에 발급사항 등 확인 실시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5. 시험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기간제 우정실무원	서류전형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ㅇ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 ㅇ 다만,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로 제한 선발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심사항목 / 배점	자격요건 만족도	직무관련 경력	정보화 자격증	자기소개서 충실·성실성	취업지원 대상자 등
80점	필수	30점	20점	20점	10점

※ 취업지원 대상자 등은 「4. 서류전형시 우대요건」 '다'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며, '정보화 자격증'과 '취업지원 대상자 등'의 심사항목에 2개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 각각 1개의 자격만 반영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평가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ㅇ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면접시험 응시자는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비서류 접수

가. 원서접수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나. 접수기간 : 2024. 2. 26.(월) ~ 2024. 2. 28.(수)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 온라인 접수시 문의사항은 고용24 콜센터(1577-7114,1544-4430)문의

※ 최종 접수 여부반드시 확인,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라. 구비서류 첨부 : 온라인 접수시 PDF·JPG 파일(성명_서류명) 첨부
또는 등기우편 제출(온라인 첨부가 어려울 경우)

- 접수처 : (54025) 전북 군산시 우체통거리1길 20
  군산우체국 지원과 인사 담당자
- 우편제출 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익일특급 등기우편)까지 인정
-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응시원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하여야함**

* 구비서류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 우정실무원 응시원서 구비서류 재중』** 표시

※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날 교부(※응시번호는 SMS문자로 송부)

마.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수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제출된 증빙서류(경력,자격등)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또는 위·변조시『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3.6.(수)
- 군산우체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나. 면접시험 : 2024.3.15.(금)
-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4.3.19.(화)
- 군산우체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1 서식 사용】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2,3 서식 사용】

다. 경력증명서 1부(우체국 근무 경력자에 한함)

※ 경력사실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 제출한 서류는 경력검증 시 발행기관에 발급사항 등 확인 및 미비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라.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단, 남자는 병적사항이 기록된 것, 미필자는 병적증명서제출)

※ 초본은 공고일(2024.2.21.)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각 증명은 해당자에 한함)

사.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7 서식 사용】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서비스(http://crims.police.go.kr)에서 공인인증서 혹은 휴대폰 인증 후 조회하여 결과확인(이상없음)후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군산우체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군산우체국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o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산우체국 전자우편(tax56001820@korea.kr)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4.3.20~2024.4.2

라. 군산우체국은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2024.4.3.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마. 기간제 우정실무원은 비공무원이며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바.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우체국 지원과(☎ 063-440-6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군산우체국에서 시행하는 2024년 제1회 기간제 우정실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군산우체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종	기간제 우정실무원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주민등록주소)	(㉮)			
전자우편		응시권역	군산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기간제 우정실무원)채용시험	
응시직종	기간제 우정실무원	성명	㊞
20 년 월 일 군산우체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지원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 : '기간제 우정실무원'을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합격자 공고는 군산우체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에 게시합니다.**

【붙임 2】

표준이력서 양식

(앞장)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경력( )	지원분야	기간제 우정실무원	접수번호	
성 명	(한글)				
현주소	(주민등록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2. 교육사항

	교육 과정명	주요내용	기관명	교육기간
직무관련 직업교육				

3. 근무 경력사항 (지원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항 기입)

근무기간	구체적 업종	직위/역할	담당업무	비 고

4. 운전 및 정보화 관련 자격사항 (채용 자격요건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5. 정보화 등 자격사항 (채용 우대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자격분류 : 국가공인자격일 경우 '국가공인', 민간공인 자격일 경우 '민간공인'으로 기재

(뒷장)

6. 직무관련 기타 활동			
활동구분	소속조직/활동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7. 특기사항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8. 기타 우대사항		
구분	내용	해당여부
지역인재		☐
기능인재(고졸인재)		☐
청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9. 운전경력사항 안내
※채용이 확정된 경우 운전경력사항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전사고, 법규위반 사항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운전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1.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향후 위 기재 사항 중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누락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합격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일자: **지 원 자:** **(인)**

※ 본인 자필로 작성하며, 기재된 사항이 합격자 발표 이후 계약서 작성 시 제출된 자료와 대사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거나 허위 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종	기간제 우정실무원
생년월일		응시분야	

지 원 동 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본인의 장.단점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만일 우정사업 종사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정보, 민감정보(사상, 신념(종교) 등)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기재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 .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印)

【붙임 4】

경 력 증 명 서

제 2024 - 호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 급	근무부서 및 직 위

근무년한	년 월	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 류	시행청	년 월 일	종 류	처분청

직위해제	년 월 일	사 유	처 분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회사명) **(인)**

작성담당부서	
작 성 책 임 자	
작 성 담 당 자	
연락전화번호	

※ 해당 기관(회사)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산우체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본인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조회·열람하였으며, 조회 결과 채용공고 혹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자격요건) 2항에 위배되는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채용 및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성명 : _____(서명)

※ **(범죄경력 자료 조회·열람 방법)** 본인에 한하여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휴대폰 인증 후 확인 가능

※※ **(관리규정 제23조(자격요건)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에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